# 소사 휴먼빌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2-675-0022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민영 |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1년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11.20.(금) | 2026.11.30.(월) | 2026.12.01.(화) | 2026.12.02.(수) | 2026.12.08.(화) | 2026.12.09.(수) ~ 2026.12.11.(금) | 2026.12.21.(월)~ 2026.12.23.(수) |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가입 |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br>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br>(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소사휴먼빌.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APT | O | O | O | O | O | O | O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2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6.11.30.(월) | 2026.12.01.(화) | 2026.12.02.(수) | 2026.12.08.(화) | 2026.12.09.(수)~<br>2026.12.11.(금) | 2026.12.21.(월)~2026.12.23.(수) |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사업주체 홍보관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홍보관<br>(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49-10 동아빌딩 401호)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홍보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불가함)

■ 1순위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부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공급대금 6억 이상 세대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안내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지세법 제1조 2항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50%)와 계약자(50%)가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공급계약서 체결 전까지 각각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구매한 정부 수입인지를 사업주체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사업주체는 구매한 정부 수입인지를 공급계약서와 함께 배부합니다.

-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합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발급 가능하며, 수입인지 구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세액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총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사업주체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 5천원 | 7만 5천원 | 17만 5천원 |
| 분양계약자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 5천원 | 7만 5천원 | 17만 5천원 |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2.12.31.「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1년 | |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 호(2026. .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77- 3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1개동 총 79세대[조합 33세대, 보류지 1세대] 중 일반분양 45세대**
**[특별공급 23세대(기관추천 4세대, 다자녀가구 4세대, 신혼부부 7세대, 생애최초 4세대, 신생아 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도시기반시설 내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신생아 | 계 | | |
| 202600591 | 01 | 059.9906A | 59A | 59.9906 | 20.3521 | 80.3427 | 43.8626 | 124.2053 | 32.4830 | 9 | 1 | 1 | 1 | 0 | 1 | 1 | 5 | 4 | 2 |
| | 02 | 059.2735B | 59B | 59.2735 | 21.8269 | 81.1004 | 43.3384 | 124.4388 | 32.7893 | 12 | 1 | 1 | 2 | 0 | 1 | 1 | 6 | 6 | 0 |
| | 03 | 059.2599C | 59C | 59.2599 | 21.8380 | 81.0979 | 43.3283 | 124.4262 | 32.7883 | 2 | 0 | 0 | 0 | 0 | 0 | 0 | 0 | 2 | 0 |
| | 04 | 059.1615D | 59D | 59.1615 | 21.8003 | 80.9618 | 43.2564 | 124.2182 | 32.7333 | 1 | 0 | 0 | 0 | 0 | 0 | 0 | 0 | 1 | 0 |

| | | | | | | | | | | | | | | | | | | | |
|---|---|---|---|---|---|---|---|---|---|---|---|---|---|---|---|---|---|---|---|
| 202600591 | 05 | 084.5869A | 84A | 84.5869 | 27.7436 | 112.3305 | 61.8465 | 174.1770 | 45.4158 | 10 | 1 | 1 | 2 | 0 | 1 | 1 | 6 | 4 | 1 |
| | 06 | 084.6433B | 84B | 84.6433 | 29.0879 | 113.7312 | 61.8876 | 175.6188 | 45.9821 | 10 | 1 | 1 | 2 | 0 | 1 | 1 | 6 | 4 | 1 |
| | 07 | 084.9848C | 84C | 84.9848 | 29.4321 | 114.4169 | 62.1373 | 176.5542 | 46.2594 | 1 | 0 | 0 | 0 | 0 | 0 | 0 | 0 | 1 | 0 |
| | 08 | 084.8257D | 84D | 84.8257 | 29.3944 | 114.2201 | 62.0210 | 176.2411 | 46.179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합 계 | | | | | | | | | 45 | 4 | 4 | 7 | 0 | 4 | 4 | 23 | 22 | 4 |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주택법」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 구 분(약식표기) | | | 59A | 59B | 59C | 59D | 84A | 84B | 84C | 84D | 합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경기도 | 1 | 0 | 0 | 0 | 0 | 0 | 0 | 0 | 1 |
| | | 수도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국가유공자 | | 0 | 0 | 0 | 0 | 1 | 0 | 0 | 0 | 1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0 | 0 | 0 | 0 | 0 | 1 | 0 | 0 | 1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중소기업 근로자 | | 0 | 1 | 0 | 0 | 0 | 0 | 0 | 0 | 1 |
| | 소계 | | 1 | 1 | 0 | 0 | 1 | 1 | 0 | 0 | 4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 | 1 | 1 | 0 | 0 | 1 | 1 | 0 | 0 | 4 |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소계 | | 1 | 1 | 0 | 0 | 1 | 1 | 0 | 0 | 4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1 | 2 | 0 | 0 | 2 | 2 | 0 | 0 | 7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1 | 1 | 0 | 0 | 1 | 1 | 0 | 0 | 4 |
| 신생아 특별공급 | | | 1 | 1 | 0 | 0 | 1 | 1 | 0 | 0 | 4 |
| 합 계 | | | 5 | 6 | 0 | 0 | 6 | 6 | 0 | 0 | 23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 약식 표기 | 공급 세대수 | 호실 | 공급금액 | | | 계약금 (10%) | | 중도금 (60%) | | | | | | 잔금 (30%)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계약후 1개월 내 (잔여금) | 1차(10%) 2027.03.05 | 2차(10%) 2027.05.07 | 3차(10%) 2027.07.05 | 4차(10%) 2027.10.20 | 5차(10%) 2027.12.20 | 6차(10%) 2028.02.23 | 입주 지정기간 |
| 59A | 9 | 103 | 151,823,700 | 354,255,300 | 506,079,000 | 10,000,000 | 40,607,900 | 50,607,900 | 50,607,900 | 50,607,900 | 50,607,900 | 50,607,900 | 50,607,900 | 151,823,700 |
| | | 105 | 150,649,200 | 351,514,800 | 502,164,000 | 10,000,000 | 40,216,400 | 50,216,400 | 50,216,400 | 50,216,400 | 50,216,400 | 50,216,400 | 50,216,400 | 150,649,200 |
| | | 203 | 156,169,350 | 364,395,150 | 520,564,500 | 10,000,000 | 42,056,450 | 52,056,450 | 52,056,450 | 52,056,450 | 52,056,450 | 52,056,450 | 51,857,000 | 156,368,800 |
| | | 205 | 154,759,950 | 361,106,550 | 515,866,500 | 10,000,000 | 41,586,650 | 51,586,650 | 51,586,650 | 51,586,650 | 51,586,650 | 51,586,650 | 51,586,650 | 154,759,950 |
| | | 303 | 159,340,500 | 371,794,500 | 531,135,000 | 10,000,000 | 43,113,500 | 53,113,500 | 53,113,500 | 53,113,500 | 53,113,500 | 53,113,500 | 53,113,500 | 159,340,500 |
| | | 305 | 158,048,550 | 368,779,950 | 526,828,500 | 10,000,000 | 42,682,850 | 52,682,850 | 52,682,850 | 52,682,850 | 52,682,850 | 52,682,850 | 52,682,850 | 158,048,550 |
| | | 403 | 161,102,250 | 375,905,250 | 537,007,500 | 10,000,000 | 43,700,750 | 53,700,750 | 53,700,750 | 53,700,750 | 53,700,750 | 53,700,750 | 53,700,750 | 161,102,250 |
| | | 405 | 159,927,750 | 373,164,750 | 533,092,500 | 10,000,000 | 43,309,250 | 53,309,250 | 53,309,250 | 53,309,250 | 53,309,250 | 53,309,250 | 53,309,250 | 159,927,750 |
| | | 1605 | 167,796,900 | 391,526,100 | 559,323,000 | 10,000,000 | 45,932,300 | 55,932,300 | 55,932,300 | 55,932,300 | 55,932,300 | 55,932,300 | 55,932,300 | 167,796,900 |
| 59B | 12 | 204 | 152,528,400 | 355,899,600 | 508,428,000 | 10,000,000 | 40,842,800 | 50,842,800 | 50,842,800 | 50,842,800 | 50,842,800 | 50,842,800 | 50,842,800 | 152,528,400 |
| | | 304 | 155,895,300 | 363,755,700 | 519,651,000 | 10,000,000 | 41,965,100 | 51,965,100 | 51,965,100 | 51,965,100 | 51,965,100 | 51,965,100 | 51,965,100 | 155,895,300 |
| | | 404 | 157,422,150 | 367,318,350 | 524,740,500 | 10,000,000 | 42,474,050 | 52,474,050 | 52,474,050 | 52,474,050 | 52,474,050 | 52,474,050 | 52,474,050 | 157,422,150 |
| | | 504 | 158,557,500 | 369,967,500 | 528,525,000 | 10,000,000 | 42,852,500 | 52,852,500 | 52,852,500 | 52,852,500 | 52,852,500 | 52,852,500 | 52,852,500 | 158,557,500 |
| | | 604 | 159,379,650 | 371,885,850 | 531,265,500 | 10,000,000 | 43,126,550 | 53,126,550 | 53,126,550 | 53,126,550 | 53,126,550 | 53,126,550 | 53,126,550 | 159,379,650 |
| | | 704 | 160,201,800 | 373,804,200 | 534,006,000 | 10,000,000 | 43,400,600 | 53,400,600 | 53,400,600 | 53,400,600 | 53,400,600 | 53,400,600 | 53,400,600 | 160,201,800 |
| | | 804 | 161,239,275 | 376,224,975 | 537,464,250 | 10,000,000 | 43,746,425 | 53,746,425 | 53,540,500 | 53,540,500 | 53,540,500 | 53,540,500 | 53,540,500 | 162,268,900 |
| | | 904 | 162,041,850 | 378,097,650 | 540,139,500 | 10,000,000 | 44,013,950 | 54,013,950 | 54,013,950 | 54,013,950 | 54,013,950 | 54,013,950 | 54,013,950 | 162,041,850 |
| | | 1004 | 162,864,000 | 380,016,000 | 542,880,000 | 10,000,000 | 44,288,000 | 54,288,000 | 54,288,000 | 54,288,000 | 54,288,000 | 54,288,000 | 54,288,000 | 162,864,000 |
| | | 1104 | 163,803,600 | 382,208,400 | 546,012,000 | 10,000,000 | 44,601,200 | 54,601,200 | 54,601,200 | 54,601,200 | 54,601,200 | 54,601,200 | 54,601,200 | 163,803,600 |
| | | 1204 | 164,723,625 | 384,355,125 | 549,078,750 | 10,000,000 | 44,907,875 | 54,907,875 | 54,907,875 | 54,907,875 | 54,907,875 | 54,907,875 | 54,907,875 | 164,723,625 |
| | | 1304 | 164,958,525 | 384,903,225 | 549,861,750 | 10,000,000 | 44,986,175 | 54,986,175 | 54,986,175 | 54,986,175 | 54,986,175 | 54,986,175 | 54,986,175 | 164,958,525 |
| 59C | 2 | 1404 | 165,154,275 | 385,359,975 | 550,514,250 | 10,000,000 | 45,051,425 | 55,051,425 | 55,051,425 | 55,051,425 | 55,051,425 | 55,051,425 | 55,051,425 | 165,154,275 |
| | | 1504 | 165,154,275 | 385,359,975 | 550,514,250 | 10,000,000 | 45,051,425 | 55,051,425 | 55,051,425 | 55,051,425 | 55,051,425 | 55,051,425 | 55,051,425 | 165,154,275 |
| 59D | 1 | 104 | 148,065,300 | 345,485,700 | 493,551,000 | 10,000,000 | 39,355,100 | 49,355,100 | 49,355,100 | 49,355,100 | 49,355,100 | 49,355,100 | 49,355,100 | 148,065,300 |
| 84A | 10 | 101 | 208,690,425 | 486,944,325 | 695,634,750 | 10,000,000 | 59,563,475 | 69,563,475 | 69,563,475 | 69,563,475 | 69,563,475 | 69,563,475 | 69,563,475 | 208,690,425 |
| | | 201 | 214,877,700 | 501,381,300 | 716,259,000 | 10,000,000 | 61,625,900 | 71,625,900 | 71,625,900 | 71,625,900 | 71,625,900 | 71,625,900 | 71,625,900 | 214,877,700 |
| | | 301 | 220,120,500 | 513,614,500 | 733,735,000 | 10,000,000 | 63,373,500 | 73,373,500 | 73,373,500 | 73,373,500 | 73,373,500 | 73,373,500 | 73,373,500 | 220,120,500 |
| | | 401 | 222,549,150 | 519,281,350 | 741,830,500 | 10,000,000 | 64,183,050 | 74,183,050 | 74,183,050 | 74,183,050 | 74,183,050 | 74,183,050 | 74,183,050 | 222,549,150 |
| | | 501 | 224,669,400 | 524,228,600 | 748,898,000 | 10,000,000 | 64,889,800 | 74,889,800 | 74,889,800 | 74,889,800 | 74,889,800 | 74,889,800 | 74,889,800 | 224,669,400 |
| | | 601 | 226,635,450 | 528,816,050 | 755,451,500 | 10,000,000 | 65,545,150 | 75,545,150 | 75,545,150 | 75,545,150 | 75,545,150 | 75,545,150 | 75,545,150 | 226,635,450 |
| | | 801 | 229,237,575 | 534,887,675 | 764,125,250 | 10,000,000 | 66,412,525 | 76,412,525 | 76,412,525 | 76,412,525 | 76,412,525 | 76,412,525 | 76,412,525 | 229,237,575 |
| | | 1001 | 232,186,650 | 541,768,850 | 773,955,500 | 10,000,000 | 67,395,550 | 77,395,550 | 77,395,550 | 77,395,550 | 77,395,550 | 77,395,550 | 77,395,550 | 232,186,650 |
| | | 1201 | 234,769,500 | 547,795,500 | 782,565,000 | 10,000,000 | 68,256,500 | 78,256,500 | 78,256,500 | 78,256,500 | 78,256,500 | 78,256,500 | 78,256,500 | 234,769,500 |
| | | 1401 | 234,769,500 | 547,795,500 | 782,565,000 | 10,000,000 | 68,256,500 | 78,256,500 | 78,256,500 | 78,256,500 | 78,256,500 | 78,256,500 | 78,256,500 | 234,769,500 |
| 84B | 10 | 102 | 208,825,350 | 487,259,150 | 696,084,500 | 10,000,000 | 59,608,450 | 69,608,450 | 69,608,450 | 69,608,450 | 69,608,450 | 69,608,450 | 69,608,450 | 208,825,350 |
| | | 202 | 215,031,900 | 501,741,100 | 716,773,000 | 10,000,000 | 61,677,300 | 71,677,300 | 71,677,300 | 71,677,300 | 71,677,300 | 71,677,300 | 71,677,300 | 215,031,900 |
| | | 302 | 219,927,750 | 513,164,750 | 733,092,500 | 10,000,000 | 63,309,250 | 73,309,250 | 73,309,250 | 73,309,250 | 73,309,250 | 73,309,250 | 73,309,250 | 219,927,750 |
| | | 402 | 222,202,200 | 518,471,800 | 740,674,000 | 10,000,000 | 64,067,400 | 74,067,400 | 74,067,400 | 74,067,400 | 74,067,400 | 74,067,400 | 74,067,400 | 222,202,200 |
| | | 502 | 224,495,925 | 523,823,825 | 748,319,750 | 10,000,000 | 64,831,975 | 74,831,975 | 74,831,975 | 74,831,975 | 74,831,975 | 74,831,975 | 74,831,975 | 224,495,925 |
| | | 602 | 226,134,300 | 527,646,700 | 753,781,000 | 10,000,000 | 65,378,100 | 75,378,100 | 75,378,100 | 75,378,100 | 75,378,100 | 75,378,100 | 75,378,100 | 226,134,300 |
| | | 802 | 229,064,100 | 534,482,900 | 763,547,000 | 10,000,000 | 66,354,700 | 76,354,700 | 76,354,700 | 76,354,700 | 76,354,700 | 76,354,700 | 76,354,700 | 229,064,100 |
| | | 1002 | 231,993,900 | 541,319,100 | 773,313,000 | 10,000,000 | 67,331,300 | 77,331,300 | 77,331,300 | 77,331,300 | 77,331,300 | 77,331,300 | 77,331,300 | 231,993,900 |
| | | 1202 | 234,615,300 | 547,435,700 | 782,051,000 | 10,000,000 | 68,205,100 | 78,205,100 | 78,205,100 | 78,205,100 | 78,205,100 | 78,205,100 | 78,205,100 | 234,615,300 |
| | | 1402 | 234,923,700 | 548,155,300 | 783,079,000 | 10,000,000 | 68,307,900 | 78,307,900 | 78,307,900 | 78,307,900 | 78,307,900 | 78,307,900 | 78,307,900 | 234,923,700 |
| 84C | 1 | 1705 | 236,542,800 | 551,933,200 | 788,476,000 | 10,000,000 | 68,847,600 | 78,847,600 | 78,847,600 | 78,847,600 | 78,847,600 | 78,847,600 | 78,847,600 | 236,542,800 |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분양대금을 책정하였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미포함 금액이며,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 [종합토지세(분리과세 기준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합니다. (다만, 소수점 이하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2025.10.15.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LTV 및 DSR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br>생애최초<br>**신생아**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br>노부모부양<br>**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br>→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br>***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br>-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br>-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br>-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br>→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br>-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br>-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br>-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br>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br>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br>※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br>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br>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br>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br>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br>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r><td>청약통장<br>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r>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br>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br>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br>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td></tr>
</table>

##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br>■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br>■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br>■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br>■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br>■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br>■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br>-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br>■ **①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 50%**(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br>※ 우선공급(경기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된 물량이 있을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접수 결과 미달 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br>※ 우선공급 낙첨자는 기타지역에 배정된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우선 공급 미적용 됩니다.<br>■ **②배점** |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3명 | 35 | |
| | | 2명 | 25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br>***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7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br>■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br>■ **①소득구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1단계 | 우선공급<br>(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2단계 | 일반공급<br>(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3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6.11.20.**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 | | | | | |
|---|---|---|---|---|---|---|---|---|
|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
|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10,547,268원** | **8,802,203원~ 12,323,083원** | **9,326,986원~ 13,057,779원** | **9,906,264원~ 13,868,768원** | **10,485,542원~ 14,679,757원** | **11,064,820원~ 15,490,74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9,040,517원~ 12,054,021원** | **10,562,643원~ 14,083,523원** | **11,192,383원~ 14,923,176원** | **11,887,517원~ 15,850,021원** | **12,582,650원~ 16,776,866원** | **13,277,784원~ 17,703,710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15,490,748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br>(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br>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br>*「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0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br>-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br>■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td></tr>
<tr><td>당첨자<br>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br>■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br>■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br>-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td rowspan="6">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6">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0"></td><td rowspan="4"></td><td rowspan="4"></td><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10">③입주자저축<br>가입기간</td><td rowspan="10">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
<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 colspan="6">※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td></tr>
<tr><td colspan="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br>■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br>-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br>*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비고</td><td colspan="5">■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br>-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br>■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td></tr>
</table>

##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4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br>-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br>**※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br>■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br>-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br>-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br>*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table>
<tr><td></td><td>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br>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br>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br>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br>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br>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td></tr>
<tr><td>당첨자<br>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br>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br>(5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br>(2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3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br>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br>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td></tr>
<tr><td>비고</td><td>
■ 자녀기준<br>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br>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br>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br>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br>
■ 소득기준<br>
- 소득 확인 시점
<table>
<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
<tr><td>2026.11.20.</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
</table>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table>
<tr><th>소득구분</th><th>비율</th><th>소득금액</th></tr>
</table>
</td></tr>
</table>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우선공급** |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
| **일반공급** | | 130% 초과<br>160% 이하 | **9,793,893원~<br>12,054,021원** | **11,442,864원~<br>14,083,523원** | **12,125,082원~<br>14,923,176원** | **12,878,143원~<br>15,850,021원** | **13,631,204원~<br>16,776,866원** | **14,384,266원~<br>17,703,710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br>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2,054,021원** | **~14,083,523원** | **~14,923,176원** | **~15,850,021원** | **~16,776,866원** | **~17,703,710원** |
| |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br>(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br>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br>*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br>■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td></tr>
<tr><td>당첨자<br>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br>■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br>(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br>(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able></td></tr>
</table>

| | | |
|---|---|---|
| 3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6.11.20.**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우선공급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
|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 **9,793,893원~ 12,054,021원** | **11,442,864원~ 14,083,523원** | **12,125,082원~ 14,923,176원** | **12,878,143원~ 15,850,021원** | **13,631,204원~ 16,776,866원** | **14,384,266원~ 17,703,710원** |
| 추첨공급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br>(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br>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br>*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br>■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r>- 1순위<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분 | 타입(약식표기)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60㎡ 이하 | **54A, 54B, 54C, 54D** | 40% | 60%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84A, 84B, 84C, 84D** | 40% | 60%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br>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br>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

| | |
|---|---|
| |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 외국인 직계존속<br>-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br>※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br>-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br>-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br>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br>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br>***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단계 | 비율 | 내용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
|---|---|
| |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안내**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 2026.11.30.(월)<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br>(사업주체 홍보관: 10:00~14:00) | 인터넷 청약<br>(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소사 휴먼빌 홍보관<br>(주소: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349-1번지 동아빌딩 401호) |
| 일반공급 | **1순위** | 2026.12.01.(화) 09:00~17:30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2순위** | 2026.12.02.(수) 09:00~17:30 | |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홍보관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 |
|---|---|---|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 | | |
|---|---|---|
| |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br>-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 **공고단지 청약연습** |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br>-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br>-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br>- **조회기간** : **2026.12.08.(화) ~ 2026.12.17(목) (10일간)**<br>-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br>-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문자** | - **제공일시** : **2026.12.08.(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br>-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br>***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r>-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 구분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서류제출 장소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당첨자 | 2026.12.09.(수)~2026.12.11.(금), 3일간 | • 소사 휴먼빌 홍보관<br>(주소: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349-10번지 동아빌딩 401호) |
| | 예비입주자 |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 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접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공급(추첨) 방법 등을 당사 홈페이지(**https://www.소사휴먼빌.com**)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 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미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필히 서류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서류제출 및 동·호수 배정, 계약 등)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소사휴먼빌.com**) 게시 또는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여부 및 부적격소명 등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물량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O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br>※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O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br>※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
| | O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위임인(대리) 계약 불가 |
| | O | |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 | | O | 복무확인서 | |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 해외근무자<br>(단신부임) | O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br>•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br>•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br>•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 | O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br>세대원 |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br>•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 | O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배우자 및<br>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br>•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 및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기관추천<br>특별공급 | O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br>※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다자녀가구<br>특별공급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 및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br>(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br>(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출산 이행 각서 | | • 임신의 경우 (홍보관 내 비치)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의 경우<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O | | 소득증빙서류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br>(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출산 이행각서 | | • 임신의 경우 (홍보관 내 비치)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O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br>•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의 경우<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O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O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br>• 조회 기간 :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 O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직계비속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br>• 조회 기간 : 직계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의 경우 |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 O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O | | 소득 증빙서류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br>※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
| | | O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br>•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br>(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출산 이행각서 | | • 임신의 경우 (홍보관 내 비치)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생아 특별공급 | O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O | | 소득 증빙서류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br>※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
| | | O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br>•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O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O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 | O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입양관계증명서<br>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출산 이행각서 | | • 임신의 경우 (홍보관 내 비치)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O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의 경우<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 O | 위임장 | 청약자 | • 홍보관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br>•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O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O | 도장 | 대리인 | • 서명 또는 날인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건축물등기부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O | |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 O | |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 O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 | O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20.)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은 사본을 보관하므로 모바일 신분증이 불가하오니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직인 날인)<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br>※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br>※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① 해당직장<br>② 해당직장/세무서(홈택스)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br>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①, ② 해당직장 |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연봉계약서의 총급여를 월할계산 |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①, 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① 해당직장<br>② 세무서(홈택스)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br>② 사업자등록증명 | ①, ② 세무서(홈택스) |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br>② 사업자등록증명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br>② 세무서(홈택스) |
|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재표 원본(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br>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① ~ ③ 해당직장<br>④ 세무서 ⑤ 등기소 |
|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br>②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① 해당직장<br>② 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 ① 행정복지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①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 |
| 무직자 |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br>②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① 홍보관 비치<br>② 세무서(홈택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생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br>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br>③ 행정복지센터 |
| |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①,② 행정복지센터 |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 발급처 |
|---|---|---|---|
| | |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br>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br>(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br>위택스(www.wetax.go.kr) |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br>①농지대장 ②축산업 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 행정복지센터<br>② 지자체 축산과<br>③ 토지이음(www.eum.go.kr)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②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br>(www.iros.go.kr)<br>② 행정복지센터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이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보유 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 아래 제출하는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br>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① 해당직장<br>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① 세무서<br>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br>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br>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br>(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① 해당직장/세무서<br>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 소득세납부<br>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br>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br>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br>② 근로소득원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br>② 해당직장<br>③ 해당직장/세무서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중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연속적인 납부 실적이 아닌,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3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O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br>※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O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 O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본인 발급용에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위임인(대리) 계약 불가 |
| | O | |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 | | O | 복무확인서 | |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O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br>•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br>•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br>•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불가 |
| | O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br>•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 | O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br>•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 입주자)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br>•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 | | O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 • 민영주택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br>(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O | 당첨사실 확인서 |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br>• 조회 기간 :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br>• 조회 기간 : 자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br>•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O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br>-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 O | 위임장 | 청약자 | • 홍보관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br>•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O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O | 도장 | 대리인 | • 서명 또는 날인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O | |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 O | |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 O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 | O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20.)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은 사본을 보관하므로 모바일 신분증이 불가하오니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br>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br>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br>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br>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br>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br>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br>*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br>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br>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br>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br>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br>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br>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br>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br>-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br>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br>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br>**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br>**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br>**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br>**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br>**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계약일정 | 계약 장소 | 비고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6.12.19.(토),<br>2026.12.21.(월)~2026.12.22.(화), 3일간<br>10:00 ~ 16:00 | • 소사 휴먼빌 홍보관<br>(주소: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349-10번지 동아빌딩 401호 ) |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제출서류는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 | ○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본인 발급용에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위임인(대리) 계약 불가<br>※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인감도장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한 경우 생략 |
| | ○ |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 • 홍보관 내 비치 |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홍보관 내 비치 (※ 6억 초과 주택에 한함) |
| |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 위임장 | | • 홍보관 내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홍보관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좌구분 |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분양대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우리은행** | 1005-104-760963 | **소사본동277의30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br>일신건영(주)<br>주택도시보증공사서부기금센터** |

※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서로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 예금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801"으로 기재)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홍보관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관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불가]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홍보관 제출 [홍보관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가 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 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천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최종 사업계획(변경포함)승인도서 및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유니트(제조사, 디자인, 위치 등) 및 홍보물 일체(POP, 이미지 외)는 소비자(분양자 외)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시공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 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홍보관을 방문하시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02.28.시행)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 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에서 일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 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법에 따름.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2)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3)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홍보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총 공급금액 중 60% 이내 중도금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 지정기간 내 대출시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변경된 입주개시월의 이자납입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개시월 이자납입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무이자 적용은 계약자의 대출 미신청자 또는 부적격 사유(신용불량, 대출자격미달 등)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한 자는 제외됩니다.
- 분양대금 대출신청은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일자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미신청,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신용불량,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액의 축소나 제한, 대출불가 판정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거나 일부만 대출될 경우 계약자는 해당 공급금액을 약정일자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대출 무이자 조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 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9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계약 시 | 2027.09.15 | 입주지정일 |
| 54A | 14,300,000 | 1,430,000 | 1,430,000 | 11,440,000 |
| 54B | 14,300,000 | 1,430,000 | 1,430,000 | 11,440,000 |
| 54C | 14,300,000 | 1,430,000 | 1,430,000 | 11,440,000 |
| 54D | 14,300,000 | 1,430,000 | 1,430,000 | 11,440,000 |
| 84A | 17,600,000 | 1,760,000 | 1,760,000 | 14,080,000 |
| 84B | 17,600,000 | 1,760,000 | 1,760,000 | 14,080,000 |
| 84C | 17,600,000 | 1,760,000 | 1,760,000 | 14,080,000 |
| 84D | 17,600,000 | 1,760,000 | 1,760,000 | 14,080,000 |

•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확장 시 제공되는 무상 옵션 품목[붙박이장, 전동식 빨래건조대, 전기오븐, 주방 상판(엔지니어드스톤), 거실 아트월, 전자식 비데]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는 붙박이장의 설치 위치입니다.(59A(침실1), 59B,C,D/84A,B(침실2), 84C,D(안방))
• ※ 소비자의 자의로 무상 제공 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미시공 요청)하더라도, 이에 따른 차액 환불이나 별도의 비용 감액은 불가합니다.

2)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일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스프링클러)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에어컨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 실외기실 등 외부 창호는 계약 미포함 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가 시공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또한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가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주거만족도 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에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및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그릴 창호의 규격, 크기, 형태, 턱높이, 연결되는 노출배관의 위치 등은 주거 만족도 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층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층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포함되는 지급 품목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창호는 지역별 단열성능 확보제품으로 설치되며 창호 및 유리(원자재 브랜드, 제조사)는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별도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본 발코니 확장 공급 계약은 가구, 전자제품 계약과 무관하며, 추후 홍보관에 전시품목으로 설치되어 있던 제품의 미설치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가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홍보관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우리은행** | 1005-104-760963 | **소사본동277의30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br>일신건영(주)<br>주택도시보증공사서부기금센터**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는 상기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발코니 확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801"으로 기재)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홍보관제출 [홍보관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공통옵션(현관중문,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가전옵션)

| 구분 | 품목 | | 설치 위치 및 옵션 구성 | 공급금액 | 계약금(10%)<br>계약 시 | 중도금(10%)<br>2027.09.15 | 잔금(80%)<br>입주 시 | 비고 |
|---|---|---|---|---|---|---|---|---|
| 공통옵션 | 현관 중문 | |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
| | 시스템에어컨<br>(4대) | 59타입 |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천정보강 포함) | 6,300,000 | 630,000 | 630,000 | 5,040,000 | - |
| | | 84타입 |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천정보강 포함) | 7,000,000 | 700,000 | 700,000 | 5,600,000 | |
| | 붙박이장 | 59A, 59B,<br>59C, 59D | - 안방 | 3,400,000 | 340,000 | 340,000 | 2,720,000 | |
| | | 84A, 84B | - 안방 | 3,800,000 | 380,000 | 380,000 | 3,040,000 | |
| | | 84C, 84D | - 안방 | 3,100,000 | 310,000 | 310,000 | 2,480,000 | |
| | 가전옵션 | - 비스포크<br>냉장고(3도어)<br>- 냉장고장 포함 | *비스포크(3도어) 냉장고 | 6,250,000 | 625,000 | 625,000 | 5,000,000 | - |
| | | - 인덕션 | 모델명: SS1H-3605TTLB / 하츠 | 420,000 | 42,000 | 42,000 | 336,000 | - |

* 자재 수급 불가, 제조사 단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는 **시중 소비자가격 및 성능 사양 기준 최초 제안 품목과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우리은행** | 1005-104-760963 | **소사본동277의30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br>일신건영(주)<br>주택도시보증공사서부기금센터**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는 상기계좌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및 유상옵션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유상옵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801"으로 기재)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홍보관 제출[홍보관에서 수납 불가](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공동주택 컨셉 및 주택형태, 크기, 현시점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입주시점의 시장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가 적의 판단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라며, 자재(모델)의 가격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또는 타 자재(모델)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배수관이 천장속에 설치되어 시스템에어컨에 연결되므로, 별도의 배관 연결구가 시공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거실/침실1의 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공사비용은 차감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추후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최종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으로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공간협소 및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등기구 위치 등 세대내 조건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미선택시 거실은 스탠드, 침실1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침실1)은 설치하지 아니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세대 내 제공되는 무선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관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에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홍버관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홍보관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마감자재(유리, 시트, 타일 등)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 단지 여건 등

**■ 홍보관 관련 유의사항**

- 홍보관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관에 설치된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홍보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홍보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홍보관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홍보관 단위세대 내부에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홍보관의 배선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홍보관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됨(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홍보물[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홍보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

**■ 단지외부 여건**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재질, 높이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및 CG상에 표현된 주변지역의 레벨 및 공원, 조경 계획은 단순 참고 사항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계약 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외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홍보관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관리실, 근린생활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지상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핑 후 메인배수관에 연결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 (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지상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출입구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원칙으로 계획, 시공하였습니다.
- 단지 내 지하/지상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지상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지상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지상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단지 내에는 외부 휴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단지내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용 CG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에 인접하여 펌프실, 전기실, 지하/지상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들은 홍보관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서 계약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량통행구간 유효 높이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홍보관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설치)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매립배관과 관련 시설물(콘센트)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냉매매립배관 및 관련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기본 에어컨이 아닌 추가설치 에어컨은 실외기 설치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됨.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타시설물과 간섭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혹은 보조주방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로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온수분배기는 주방 싱크 하부장에 설치되며, 싱크 하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음.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가스, 전기 겸용으로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음.

- 전기 쿡탑 옵션 선택시에도 주방 가스 공급용 배관이 설치되며, 상부장 하부에 가스 차단기 설치 후 캡마감 처리됨.
- 양변기는 관련법에 의거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 양변기에 비해 배출 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음.
- 발코니 및 욕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위생금구, 배수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정 환기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실외기 설치공간의 경우 비난방공간 임.
- 각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기구류(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 (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 설치 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창호는 닫힘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한기에는 최소한의 난방가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욕실가구,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비확장형 선택 시 기본형 옵션 및 플러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의 하부에는 부식 등의 하자 방지를 위하여 마루(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등 가구 뒷벽과 하부에는 벽지 및 타일 등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 (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 (침실,욕실,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타입 별 평면에 따라 개폐방식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홍보관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1~2층 적외선감지기,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및 거실등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됨

• 홍보관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침실 문 뒤 벽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실 발코니 비확장 및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홍보관과 위치 및 색온도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침실,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 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상판 등에 사용된 석재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매가 노출되며 홍보관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타일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홍보관은 2026년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 지지 아니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홍보관(홍보관),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개발계획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개발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은 위탁자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종료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하고, 단지별 시설차이로 인한 일반관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단지 내 명칭, 동 번호는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홍보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음.
-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시행에 따라 분기별 감리 보고시 입주예정자는 참여가 가능함.
- 사용검사시 지구단위계획인가에 따른 기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 준공이 완료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될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입주 전까지 공급 될 예정이며, 필요시 가스공급을 위한 단지정압기가 조경공간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A/C실외기 등),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품목이며, 제조사 및 모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이동 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지상1층(D,A상부 인근), 중계장치 설치 위치: 지하1층(제연휀룸-1)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 할 수 있음.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계획변경**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개선을 위한 옥상조형물, 입면돌출벽, 문주 등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 조망 등 일부 가려질 수 있고 하부 및 인접세대의 별도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품 및 동선 개선을 위한 동출입구의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상세검토를 통해 규모, 형태, 디자인 및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 창호 주변 진입로가 형성되거나 시설물로 인한 일조, 조망 등 일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지상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환경개선(기능)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단지 전체의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방은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 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일부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시설물(문주 등), 주변대지와의 레벨차이에 따른 옹벽 및 조경으로 인해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층간 완충재 관련 법적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필로티 및 외부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입주민용 및 상가용)는 단지 내 반영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공용 엘리베이터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 하고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지상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 (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지상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 주변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홍보관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정면상부 및 측벽에 조명형 BI가 설치되며 인접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옥탑상부에 경관 조명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홍보관에 게시 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인근 저층부는 냄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배치상 인접세대 위치 및 창호설치에 따라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전기공급용 가공전주 설치로 인하여 미관저해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음.

**■ 공용홀**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1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예정일 : 2028년 05월 예정 (도시기반시설 내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60일이상 제공될 예정이며, 실제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제 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실 등**

**■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 조에 의거 적용 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건축 감리 | 토목 감리 | 기계 감리 | 전기 감리 | 소방 감리 | 정보통신 감리 |
|---|---|---|---|---|---|---|
| 회사명 | ㈜신담엔지니어링 | | | ㈜건일엠이씨 | | |
| 감리금액 | 567,111,402 | | | 55,000,000 | 44,000,000 | 44,0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 내진능력(MMI등급) | 등급 |
|---|---|
| 내진능력(Ⅶ 0.224g) | 내진Ⅰ등급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의2)**

| 주차장 차로의 폭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6.5M ~ 7.0M | 지하 1층 : 2.7m<br>지하 2층 : 2.3m | 주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 2.7m<br>부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 2.3m |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 구분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부위, 설치개수 등 |
|---|---|---|---|
| 건축부문 설계기준<br>(제7조제2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일반사항 설계기준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설계기준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설계기준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br>(제7조제2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br>(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급수펌프(마목) | 적용 |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가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br>(제7조제2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해당없음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 | | |
|---|---|---|---|
| | | |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주택법」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표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이천 갈산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 청 자 : 일신건영㈜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572-1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나. 구조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내구성 | ★ |
| 2. 가변성 | ★★★ |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 |
| 3. 토공사 절토·성토량(암위기·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 |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
| 5. 에너지 성능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 |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 |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 |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 |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 |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 |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 |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 |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 |
| 16. 빗물관리 | - |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 |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20. 옥계획 녹지축 조성 | - |
| 21. 자연지반 녹지율 | ★ |
| 22. 생태면적률 | ★ |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 |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 |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 |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 |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 |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 |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
| 13. 홈네트워크 응용시스템 | ★★ |
| 14. 방범안전 콘텐츠 | ★★ |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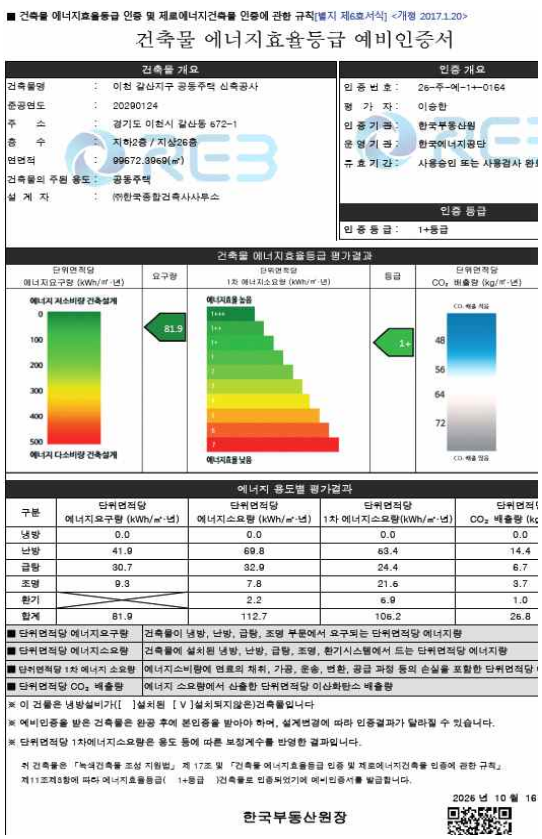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감지 및 경보설비 | ★★★ |
| 2. 제연설비 | ★ |
| 3. 내화성능 | ★ |
| 4. 수평피난거리 | ★ |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 |
| 6. 피난설비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10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 이천 갈산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 인증번호 | : 26-주-에-1+-0164 |
| 준공연도 | : 20290124 | 평가자 | : 이승한 |
| 주소 | :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572-1 | 인증기관 | : 한국부동산원 |
| 층수 | : 지하2층 / 지상26층 | 운영기관 | : 한국에너지공단 |
| 연면적 | : 99672.3969㎡) | 유효기간 |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공동주택 | | |
| 설계자 |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 인증 등급 | |
| | | 인증등급 | : 1+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 |
|---|---|---|---|---|
| 냉방 | 0.0 | 0.0 | 0.0 | 0.0 |
| 난방 | 41.9 | 69.8 | 63.4 | 14.4 |
| 급탕 | 30.7 | 32.9 | 24.4 | 6.7 |
| 조명 | 9.3 | 7.8 | 21.6 | 3.7 |
| 환기 | | 2.2 | 6.9 | 1.0 |
| 합계 | 81.9 | 112.7 | 106.2 | 26.8 |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 V ]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 년 10 월 16

한국부동산원장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 이천 갈산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 인증번호 | : G-SEED-P-2025-1058-9 |
| 건축주 | : 일신건영㈜ | 인증기관 |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준공(예정)일 | : 2029년 1월 24일 | 유효기간 | : 2025. 11. 10.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
| 주소 | :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572-1번지 일원 | | |
| 층수 | : 지하 2층, 지상 26층 | 인증 등급 | |
| 연면적 | : 99,672.3959㎡(평가면적:99,487.2803㎡) | 인증등급 | : 우량(그린3등급)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인증기준 |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 고시 제2023-172호 |
| 설계자 |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 |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량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사업주체 (시행사 / 시공사) |
|---|---|
| 상호 | 소사본동277의30번지일원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일신건영㈜ |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160번길 41(소사본동, 2층)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11(성내동), 삼원타워 4층 |
| 법인등록번호 | 121171-0008578 / 110111-0655477 |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호 | 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 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 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 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 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 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 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소사휴먼빌.com**
**■ 홍보관 위치 : 소사 휴먼빌 홍보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49-10번지 동아빌딩 401호)**
**■ 분양 문의 : ☎ 032-675-0022**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